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 개요

1) 공급 규모

- ①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641번지 (용죽지구 1-2BL)
- ②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25~27층 / 총 6개동 / 총 5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③ 주 택 형 : 74A㎡(258세대), 74B㎡(71세대), 84㎡(254세대)

2) 기관별 공급세대 배분(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세대 / 괄호:예비입주자】

구분	공급 세대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소 계
		경기	서울	인천					
74A	258	5 (15)	3 (9)	3 (9)	4 (12)	3 (9)	3 (9)	5 (15)	26 (78)
74B	71	1 (3)	1 (3)	1 (3)	1 (3)	1 (3)	1 (3)	1 (3)	7 (21)
84	254	5 (15)	3 (9)	3 (9)	4 (12)	3 (9)	3 (9)	4 (12)	25 (75)
합계	583	11 (33)	7 (21)	7 (21)	9 (27)	7 (21)	7 (21)	10 (30)	58 (174)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공급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입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함)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지역배분에 맞추어 해당 지역별 추천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대상자 추천 시 청약주택형을 필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II 공급 일정(예정)

구 분	일 정(예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0.07.23일(목)	건본주택,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주택전시관 개관	2020.07.24일(금)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25-4
특별공급 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2020.08.03.(월) 08:00~17:30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건본주택 방문접수 2020.08.03.(월) 10:00~14:00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0.08.11.(화) 08:00~17:30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계약 기간	2020.08.24.(월)~08.26(수) 10:00~14:00	당사 주택전시관 : 평택시 죽백동 625-4

- ※ 모집공고일 등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장미사용 대상자도 인터넷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인터넷 청약신청 전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신청이 어려운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일반인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 청약접수 불가)
- ※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특별공급 자격요건

<p>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p>무주택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p>청약자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2) 청약 예치 기준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평택시 /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3) 당첨자 선정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4)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 10:00~14:00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건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함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경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0.04.16.(목)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건본주택 및 안내 서류를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사업 개요

1)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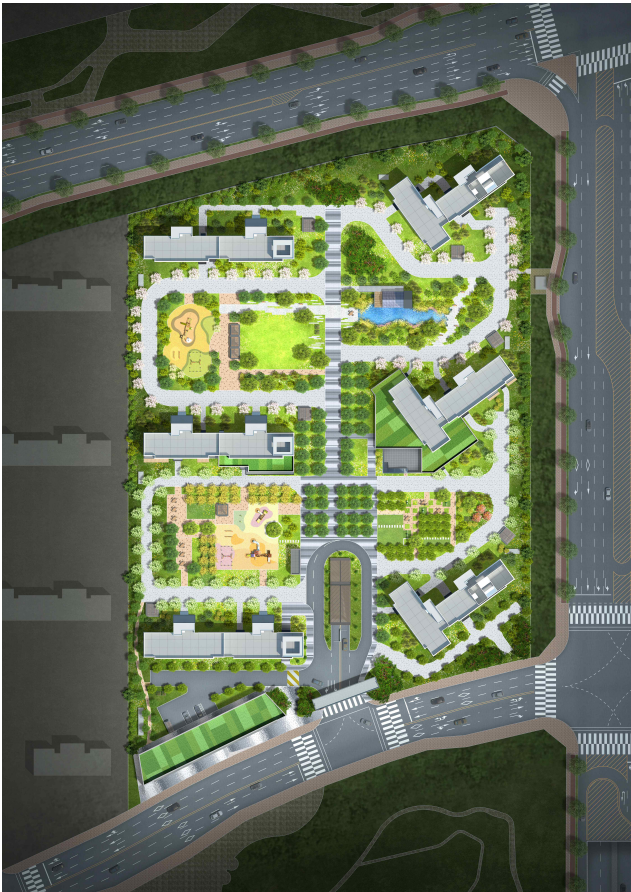


2) 위치도



※ 본 홍보물의 일러스트(그림)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의 사업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배치도



※ 본 사업개요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사항은 사업진행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는 모집 공고이후 필히 견본주택 방문 확인후 청약일에 청약 하여야 합니다.